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7,089,946	13,412,698
일반회계	407,500,000	12,225,000
특별회계	39,589,946	1,187,698
공기업특별회계	25,538,483	766,1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145,734	424,37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392,749	341,782
기타특별회계	14,051,463	421,544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1,700,000	51,000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1,382,394	41,472
자활기금특별회계	1,517,842	45,535
주택사업특별회계	1,827,620	54,8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04,776	162,143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218,831	66,56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12,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96,56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차지출경비
3.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4. 재해대책 및 복구비